

검토의견서

【건강정책과】

제명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공포안 (의원발의)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3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과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에 「국민건강증진법」을 넣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(안 제1조)

나. 어린이 놀이터, 정류소 등 음주청정지역을 확대함(안 제3조)

3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음주청정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로,
-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우리과로 이송되어 온안과 같이 공포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참고사항

-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(책임)
 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 할 책임을 진다.
 -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(금연 및 절주운동 등)
 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·홍보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·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